

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)

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 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7. 6. 5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
- 결정(변경)취지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
- 위 치 : 서구 검암동 492-2, -6번지
-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 -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 -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 -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근린생활시설용지(B용도)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

기 정					변 경(안)				
가구 번호	가구면적 (㎡)	획지		분할가능 획 지 수	가구 번호	가구면적 (㎡)	획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적(㎡)				위치	면적(㎡)	
1	2,050.4	2	1,416.6	4	1	2,050.4	2-1	803.6	2
							2-2	613.0	2

- 근린생활시설용지(B용도)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번호	위치	변경내용	변 경 사 유
1	2 → 2-1, 2-2	획지분할 가능선 변경 및 획지분할	효율적인 토지이용

※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
라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
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마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- 고시도면 : 별첨(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: 구보게재 생략)

